

신임교원채용전형지침

개정 : 2025012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청운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하여 우수한 전임교원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임교원”이라 함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일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강의전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연구전담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을 말한다.
2. “산학협력중점교수”라 함은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 취업지원활동을 중점으로 추진하는 교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전임교원 신규채용을 위한 채용절차 등은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②전임교원 특별채용의 경우 전임교원특별채용규정에 따른다.〈개정 2025.01.22.〉

제4조(지원자격) ①전임교원의 신규채용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대학교원 등 자격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2. 박사학위소지자
- ②제1항 2호의 경우 채용분야별 초빙조건을 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5조(제출서류)①신규채용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용지원서 1부.
2. 연구실적목록 1부.
3. 학사, 석사, 박사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4. 경력증명서 각 1부.
5. 자격증 및 수상경력 증명서(해당자) 각 1부.
6. 연구실적물
 - 가. 최종학위 논문 1부.
 - 나. 논문 별쇄본 각 1부.
7. 산학협력실적물
 - 가. 특허 증빙자료 1부.
 - 나. 연구과제 증빙자료 1부.
8. 창작발표회/전시회
 - 가. 작품 증빙자료 1부.
 - 나. 수상실적 각 1부.

②모든 제출서류는 지원자 본인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에 관한 귀책사유는 본인에게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심사위원의 구성 기준) ①지원자의 지원 자격과 초빙공고 상의 조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초서류 심사위원을 위촉하며, 교무연구처장을 포함하는 내부 심사위원 3명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②지원자의 전공적부, 경력적부, 연구실적물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무연구처장이 추천한 해당 전공 내부 심사위원 2명과 외부 심사위원 1명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교육능력심사는 지원자의 교육능력에 대한 우수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무연구처장을 포함하는 3 ~ 5명의 내·외부 심사위원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1차 면접심사는 지원자의 인격, 자질, 교육·연구의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총장을 포함하는 내부 심사위원 3 ~ 5인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⑤2차 면접심사는 1차 면접에 대한 심층면접으로 총장이 지원자의 인격, 자질, 교육·연구의욕 등을 심사한다.

제7조(심사위원 등의 의무) ①심사위원은 신임교원채용전형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여야 하며, 채용절차 중에 알게 된 사항에 관하여 비밀엄수의 의무를 가진다.

②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에서 제척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는 당연 무효로 한다.

1. 지원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2. 학위논문 지도교수 및 연구실적물 공동연구자
3. 기타 지원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자

③심사위원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이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 장 공개채용 심사절차 및 방법

제8조(심사절차) ①공개채용에 의한 심사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단, 연구전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과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교육능력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1. 1단계 전형: 기초서류심사
2. 2단계 전형: 전공적부, 경력적부, 연구(산학협력)실적물심사
3. 3단계 전형: 교육능력심사
4. 4단계 전형: 면접심사(1차, 2차)

②심사절차별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각 전형에서 지원자가 취득한 점수는 해당 단계 전형에서만 적용된다.

1. 전임교원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내용	등급				비고
1단계	기초서류심사	-	지원자격 적격 여부 (학력사항, 교육경력, 연구경력, 자격사항 등)	적격 / 부적격				
2단계	전공적부심사	10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A	B	C	D	
	경력적부심사	10	모집대상 경력분야와의 일치 및 우수성	A	B	C	D	
	연구실적물심사	10	연구실적심사	A	B	C	D	상대평가
3단계	교육능력심사 (공개강의)	10	용모 및 강의 준비성	A	B	C	D	상대평가
			강의내용 및 구성	A	B	C	D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A	B	C	D	
			강의전개 방법 및 능력	A	B	C	D	
			질의에 대한 응답력	A	B	C	D	
4단계	면접심사 (1차, 2차)	100	기초서류심사, 전공 및 연구실적물 심사 그리고 교육능력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며 인성평가를 위주로 하여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자질, 언어구사력, 동료 간의 친화력, 교육 및 연구의욕 등을 1차와 2차에 걸쳐 평가한다.					

* 등급별 점수 - A: 10점, B: 8점, C: 6점, D: 4점

2. 산학협력중점교수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내용	등급				비 고
1단계	기초서류심사	-	지원자격 적격 여부 (학력사항, 교육·연구경력, 자격사항, 초빙조건 등)	적격 / 부적격				
2단계	전공적부심사	10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A	B	C	D	
	경력적부심사	10	모집대상 경력분야와의 일치 및 우수성	A	B	C	D	
	산학협력실적물심사	10	산학협력실적물심사(10)	A	B	C	D	
3단계	면접심사 (1차, 2차)	100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며 인성평가를 위주로 하여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자질, 언어구사력, 동료 간의 친화력, 교육 및 연구의욕 등을 1차와 2차에 걸쳐 평가한다.					

* 등급별 점수 - A: 10점, B: 8점, C: 6점, D: 4점

제9조(기초서류심사)①기초서류심사는 지원자의 자격(학력사항, 교육·연구경력, 자격사항)과 초빙공고 상의 초빙조건 충족여부를 심사한다.

②심사위원별로 기초서류심사 각 항목 중 하나라도 부적격 판정하는 경우 해당위원의 기초서류심사는 부적격으로 판정하며,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에게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1단계 기초서류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한다.

제10조(전공적부심사)①지원자의 전공분야(학사, 석사, 박사)와 연구실적물을 통해 채용분야의 일치여부를 심사하며, 각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를 득점으로 한다.

②전공적부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다.

1. 전공분야가 채용분야와 동일한 경우(A)
2. 전공분야가 채용분야와 유사한 경우(B)
3. 전공분야가 채용분야와 관련이 적은 경우(C)
4. 전공분야가 채용분야와 관련이 없는 경우(D)

③전공적부심사점수가 평균 6점 미만인 자는 2단계 전형에서 탈락한 것으로 한다.

제11조(경력적부심사)①지원자의 교육·연구·산업체경력과 채용분야의 일치여부 및 우수성에 대하여 심사하며, 각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를 득점으로 한다.

②경력적부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다.

1. 경력분야와 채용분야가 동일하고 우수한 경우(A)
2. 경력분야와 채용분야가 유사하고 보통인 경우(B)
3. 경력분야와 채용분야가 관련이 적고 미흡한 경우(C)
4. 경력분야와 채용분야가 관련이 없는 경우(D)

제12조(연구실적물심사)①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채용분야와 일치하는 지원자의 연구실적물을 <별표 1>에 의거 평가하여 지원자들의 총 득점 순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단, 최종 학위 논문은 학위 취득 4년 이후 논문도 실적에 포함하여 심사한다.

②상대평가의 구성 비율은 득점 순으로 다음과 같은 등급을 부여한다.

등 급	A	B	C	D
구성 비율	20% 내외	30% 내외	30% 내외	20% 내외

③연구실적물심사는 각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를 득점으로 한다.

제13조(산학협력실적물심사)①산학협력중점교수를 채용하는 경우 2단계 전형 중 연구실적물심사를 대체하여 산학협력추진계획 및 실적심사를 실시한다.

②산학협력실적물심사는 지원자가 작성한 산학협력추진계획과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채용분야와 일치하는 지원자의 산학협력실적물을 심사하며, 각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를 득점으로 한다.

③산학협력실적물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다.

1. 산학협력실적 및 추진계획이 우수한 경우(A)
2. 산학협력실적 및 추진계획이 보통인 경우(B)
3. 산학협력실적 및 추진계획이 미흡한 경우(C)
4. 산학협력실적 및 추진계획이 미달인 경우(D)

제14조(교육능력심사) ①교육능력심사는 2단계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원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강의능력을 항목별(용모 및 강의준비성, 강의내용 및 구성,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강의전개방법 및 능력, 질의에 대한 응답력)로 평가하여 지원자들의 총 득점 순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②상대평가의 구성 비율은 득점 순으로 다음과 같은 등급을 부여한다.

등 급	A	B	C	D
구성 비율	20% 내외	30% 내외	30% 내외	20% 내외

③교육능력심사는 각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를 득점으로 한다.

제15조(면접심사) ①면접심사는 2단계 또는 3단계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원자의 교수로서 전임교수로서 인격과 자질, 언어구사력, 동료 간의 친화력, 교육 및 연구의욕 등을 평가하며, 심사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를 득점으로 한다.

②면접심사는 1차와 2차로 2차례 진행하며, 2차 면접심사 합격자를 최종 임용대상자로 한다.

제 3 장 합격자 결정

제16조(전형별 합격자) ①각 전형별 합격자는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아래 각 호와 같은 경우 채용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1. 채용분야별 지원자가 2명 이하이거나, 기타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기타 심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②2단계 전형(전공적부, 경력적부, 연구실적물심사)의 합격자 수는 각 심사의 합산점수가 2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이내로 한다.

③3단계 전형(교육능력심사)의 합격자 수는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이내로 하되 교육능력심사 결과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에게 6점미만의 점수를 받은 자는 불합격처리한다.

④4단계 전형(면접심사) 중 1차 면접심사의 합격자 수는 고득점자 순으로 2배수 이내로 하되, 면접심사 결과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에게 70점미만의 점수를 받은 자는 불합격처리한다.

⑤각 전형별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하되, 최종합격자 선정 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형의 역순으로 점수가 높은 지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한다.

제17조(임용) ①총장은 최종합격자를 교원인사위원회 임용 동의를 거쳐 재단 이사장에게 임용을 제청하며, 임용예정자 중 임용포기 또는 임용취소사유가 발생 시 차순위자 중 적격자가 있을 경우 최종합격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임용예정자 중 학력, 경력, 연구실적물 등 임용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해당자를 불합격 처리한다.

제 4 장 기 타

제18조(특별채용) ①교원인사규정 제11조(임용시기 및 방법) 제2항에 의한 특별채용은 총장이 채용분야와 인원을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특별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공개채용 절차를 준용하여 실시하되, 일부를 생략하거나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심사결과 공개) 공개채용에 지원한 자가 공개채용에 대한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하며,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신규계약임용규정이 정하는 바를 준용하고 기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3.05.04>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5.01.22>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입교수채용 연구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

I. 평가 기준

- ① 심사 항목 : 최종학위논문과 최근 4년 이내 발표한 논문과 학술활동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05.04.〉
- ②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공동연구에 따른 연구실적물 환산율과 점수의 배분은 각각 다음과 같다.

구분		평가 비율	연구실적물 환산율
논 문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기타학술지	• 단독저자: 1 • 주저자,교신저자: $2/(n+2)$ • 공동저자: $1/(n+2)$	• 단독저자: 100% • 주저자,교신저자: $\{2/(n+2)*100\}\%$ • 공동저자: $\{1/(n+2)*100\}\%$
	SCI(E) SSCI, A&HCI	• 단독저자: $1 \times (1+IF)$ • 주저자,교신저자: $\{2/(n+2)\} \times (1+IF)$ • 공동저자: $\{1/(n+2)\} \times (1+IF)$	• 단독저자: 150% • 주저자,교신저자: $\{2/(n+2)*150\}\%$ • 공동저자: $\{1/(n+2)*150\}\%$
학술활동		• $1/n$	• $(1/n*100)\%$

- * SCOPUS 등재는 구분하지 않고 평가
- * 논문 및 학술활동에서 n은 전체 저자수로, 저술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편집저자 등은 제외
- * 평가항목별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최종학위논문은 석사와 박사 각각 100%, 200%를 적용함

- ③ 모든 연구실적물은 On-line 게재를 포함하여 출판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④ 국내·외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학술지의 등급에 대한 분류는 〈별표 1〉과 같으며, 아래의 평가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II. 평가 방법

- ①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전임교수와 외부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 ② 지원자별 각 항목의 총점을 산출하여 총 득점 순으로 상대평가를 한다.
- ③ 상대평가 구성 비율은 득점 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등급을 부여한다.

등 급	A	B	C	D
구성비율	20% 내외	30% 내외	30% 내외	20% 내외

III. 평가조건

A. 논문

1) 학위논문 :

지원자의 최종 학위논문을 말하며 박사, 석사, 학사로 분류한다. 단, 채용학기 이전 학위취득예정자

는 취득예정학위를 인정한다. 학위논문의 내용을 공인학술지 등에 게재한 경우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2) 국내공인 학술지 :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에 한한다.

3) 기타 국내학술지 :

국내의 학술단체 및 공공기관(비영리 공익법인 포함)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학술지로 한다.

4) 국제 공인학술지 :

SCI(E), SSCI, A&HCI에 등재된 국내·외 학술지를 말한다.

5) 기타 외국 학술지 :

SCI(E), SSCI, A&HCI에 등재되지 않은 국제학술지를 말한다.

B. 학술활동

1) 국내·외 특허 :

전공과 유관한 내용만 인정하며 동일한 내용으로 국내특허와 국외특허를 중복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만 인정한다. 국내특허의 경우 발명특허는 5점을 인정하고, 실용신안과 의장등록은 각각 2점을 인정한다.

2) 연구과제 수주건수 :

과제책임자로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및 기타 공공 기관의 연구비를 수주한 경우 연구과제 1건당 5점씩 인정한다.

3) 학술상 수상 :

국제학회/국가차원의 학술상과 창작상은 20점, 국내학회차원의 학술상과 창작상은 10점을 인정한다.

4) 창작발표회/전시회 :

발표회를 거친 것만 실적물로 인정한다.

가. 미술 분야의 경우 발표회의 형태에 따라 공인된 개인전과 국제전 출품 및 입상, 국제미술행사(비엔날레, 트리엔날레 등) 전시조직·심사위원, 공공미술 창작성(지하철 미술작품 등)은 20점, 공인된 초대전과 국내 공모전(미술대전, 산업디자인전, 인테리어디자인 분야, 공예대전)의 특선 이상 및 심사위원, 환경미술 창작성은 10점, 그룹전 및 일반 단체전·국내공모전 입선, 기타 발표된 창작성은 5점을 인정한다.

나. 음악 분야의 경우 국내외 공인 독창회, 독주회, 국내외 공인 연주회의 지휘 또는 창작곡의 초연, 개인 창작 연구발표회는 20점, 국내외 공인 협연 및 발표는 10점, 공인된 연주회의 중주는 5점을 인정한다.

다. 건축학 분야의 창작성에 대하여는 국내·외 현상설계 당선작은 20점, 수상권 입상작은 10점, 기타 창작성은 5점을 인정한다.

라. 연극·영화·방송 분야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국외 제작사의 작품 연출, 주연, 희곡, 시나리오, 국제공인 연극·영화·방송제 초청/출품 작품 연출, 주연, 희곡, 시나리오, 무대감독, 조명, 무대디자인, 촬영, 편집의 경우 20점, 국내 제작사의 작품 연출, 주연, 희곡, 시나리오, 국내공인 연극·영화·방송제 초청/출품 작품 연출, 주연, 희곡, 시나리오, 무대감독, 조명, 무대디자인, 촬영, 편집의 경우는 10점, 기타 작품 연출, 주연, 희곡, 시나리오, 무대감독, 조명, 무대디자인, 촬영, 편집의 경우는 5점을 인정한다. 각색, 번안, 조연출, 기획, 기술, 연기, 음향 등으로 제작·참여한 경우 연출의 50%만을 인정한다.

단, 동일작품에서 연출, 주연, 제작참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하나만을 인정하고 순회공연, 재공연, 순회상영, 재상영, 재방송은 인정하지 않으며, 연속물(방송)은 200%를 인정한다.

Ⅳ. 연구업적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단위	이공계열	인문사회계열	예술계열
논문			
1) 학위논문	20/10/5	20/10/5	20/10/5
2) 국내 공인학술지	15	15	15
3) 기타 국내학술지	10	10	10
4) 국제 공인학술지	30	30	30
5) 기타 외국학술지	20	20	20
학술활동			
1) 국내특허	5/2	5/2	5/2
2) 외국특허	10	10	10
3) 연구과제 수주건수	5	5	5
4) 학술상 수상	20/10	20/10	20/10
5) 창작발표회/전시회	20/10/5	20/10/5	20/10/5

()학년도 ()학기 신임교수 채용 연구실적심사표

[illegible]

①연구업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논문 실적 등과 산출 결과에 대하여는 허위여부를 재확인한다.

②지원자가 제출한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밝혀질 때는 임용 뒤 언제라도 해임함을 임용계약 조건에 명백히 함.